

2024년 제2회 여수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 제2회 여수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7월 22일

여수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채용직급	채용기간	인원	담 당 직 무	근무처
정 책 지원관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2년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시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등 지원○ 기타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여수시 의회사무국 (주40시간 근무)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55조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6조, 제30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할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나.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정책지원관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연구소, 대학교, 민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행정, 지방자치, 정책기획, 법무, 예산, 회계, 감사, 조사, 분석, 연구, 도시계획, 환경, 교통, 시설, 토목, 건축, 해양, 수산 관련 업무 실무 경력자

-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
-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관련 분야 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 경력을 인정하며, 인턴·사무보조·행정지원·연구보조·단순노무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 경력기간은 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시 ⇨ 2년 인정)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가.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해당 사업의 지속여부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내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나.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에 따라 7급상당 일반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범위 중 **하한액 책정**
*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에 한함)

-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급상당(일반임기제)	66,396	47,157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서면 심사
* 서류전형 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하며**, 이 경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임용분야 자격요건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함

나. 2차시험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실시
- 시험과목 : 지방의회론
- 합격여부 :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 필기시험 시 실시한 인성검사 자료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다. 3차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

라. 합격자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불합격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와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즉시 퇴직, 합격취소,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시험공고 : 2024. 7. 22.(월) ~ 8. 1.(목) 11일간
- 응시원서 :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을 이용한 접수
- 접수기간 : 2024. 7. 26.(금) ~ 8. 1.(목) 7일간
- 접수처 : 인크루트(주) HR솔루션본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yeosucouncil.incruit.com/>)
* 등기우편 및 이메일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나.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 : 2024. 8. 6.(화) 예정
- 필기시험 : 2024. 8. 11.(일) 예정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 2024. 8. 13.(화) 예정
- 면접시험 : 2024. 8. 17.(토) ~ 8. 18.(일) 중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8. 22.(목) 전·후 예정 추후공지

- ▶ 채용공고 및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 등은 여수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council.yeosu.go.kr>) 및 채용시스템(<https://yeosucouncil.incruit.com/>) 에서 확인
- ▶ 필기·면접시험 장소 및 일정은 필기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시,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확정 공고
- ▶ 상시일정은 시험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공고 발생시(서류심사 합격자가 선발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도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 가~마 항목(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함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간주
- ▶ 바~차 항목(기타 구비서류)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에 사본(스캔) 파일 첨부 기능(원서접수화면 최하단)을 활용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을 통한 접수)

- 응시수수료[7급(상당) : 7,000원]

* 수수료납부 : 여수시의회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입금(농협 656-01-005508)

※ 반드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과 동일한 예금주로 입금

(**불일치할 경우 지원서 제출 취소 처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을 통한 접수)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을 통한 접수)

라. 직무수행계획서(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을 통한 접수)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을 통한 접수)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기관 발급서식이 없을 경우 별지

1호 서식에 내역 작성 후 기관장 직인 날인)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발급담당자 성명·발급자 인, 연락처가 있어야 함.

-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 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임.

아. 자격증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자.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출력
- 근무여부 및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관련분야 경력사항을 증빙서류 할 수 있는 서류로 해당자에 한하여 1부 제출
-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입이력포함),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중 1종
- 소득금액증명서(과세기간 관련분야 근무기간(연도) 전체설정)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제출)

차.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요약 첨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제외)
 - 원본서류에 대해서는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 단,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확인불가, 누락, 제출서류 미비,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제외 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즉시 퇴직,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시 구제는 공공기관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세부가이드라인” 을 준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여수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s://yeosucouncil.incruit.com>) 내 Q&A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직무 관련사항 : 여수시 의회사무국 총무팀(☎ 061-659-5022)

* 응시원서 등 서류 작성 및 접수 사항 : 채용 민간전문업체(☎02-2186-9053)

9. 붙임 :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경력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근무경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근무일수	일	당시종업원수 (상시근로자)	명
퇴사일자	년 월 일				
근무세부내역					
해당부서근무기간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직급(위)	특이사항
~					
~					
~					
~	※ 시간제 근무경력은 총 근무시간 기재 : 일 시간/주 시간/월 시간				
				담당자	(인)
				문의전화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